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72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서천호·서지영·진종오

백종헌 · 김용태 · 정성국

임종득 · 김예지 · 우재준

정희용 · 김선교 · 이만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 그 밖에도 창업촉진, 전문인력 양성,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 이미지 및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가치 향상, 다양한 국제 교류의 기회 제공,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,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, 진흥의목적으로서 박람회 행사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

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8 신설). 법률 제 호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8(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 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18조의8(박람회 등의 개최 및 |
| |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|
| | 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|
| |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|
| |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 |
| | 을 지원할 수 있다. |